

보험업감독규정

<목 차>

- 1.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 2.손해사정사 교육기준
- 3.손해사정업자 공시 의무

| | | | | | |
|--------------------|-------------|-------|-----|-----|-------------------|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작성자 | 이름 | 이수민 |
| | 담당부서 (과) | 보험과 | | 직급 | 행정사무관 |
| | 국장 | 안창국 | | 연락처 | 02-2100-2964 |
| | 과장 | 신상훈 | | 이메일 | soolee22@korea.kr |

2024. 04. 05.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 | | | | | | |
|------------|----------------------------------|--|--------|-----------------------|----|--|-----------|------|----------------------------------|
| | 2.규제조문 | 보험업감독규정 안 제9-1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 | | | | | | |
| | 3.위임법령 | 보험업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5조제4항 및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 | | | | | | | |
| | 4.유형 | 신설 | 5.입법예고 | 2024.04.12~2024.05.13 | | | | | |
|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은 ①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②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input type="checkbox"/> '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input type="checkbox"/> ' 24.2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 24.8.7일) | | | | | | | |
| | 7.규제내용 | <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때 보험금 삭감 유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에 위탁절차를 포함 | | | | | | | |
|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보험회사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보험회사</td> <td>약 38개사</td> </tr> </tbody> </table> | | | 유형 | | 인원수 또는 규모 | 피규제자 |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보험회사 |
| 유형 | | 인원수 또는 규모 | | | | | | | |
| 피규제자 |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보험회사 | 약 38개사 | | | | | | | |
| 9.규제목표 | 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 | | | | | | | | |
|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p>편익 :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의 공정성 제고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분쟁 감소 및 이에 따른 보험산업 신뢰성 향상</p> <p>비용 : 손해사정업무 위탁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평가기준 수립의무 이행으로 인한 행정적 불편</p> <p>단순 행정불편으로 인한 비용보다 소비자 및 보험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향상이라는 편익이 더욱 크며 보험협회의 위탁 평가기준 관련 모범규준 제공으로 규제준수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p> | | |
| 기타 | 12.규제일몰제 | 대분류 | 소분류 | |
| | |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 미해당 |
| | |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 미해당 |
| | |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 해당 |
| | |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
| | |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 |
| | |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
| | |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 |
| | | 일몰설정여부 | 일몰조문 | 연장여부 |
| | | 미설정 | | |
| | 일몰유형 | 일몰설정기간 | 일몰주기 | |
| | | | | |
| |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9-16조의2(손해사정 위탁평가)①</p> <p><u>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경영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사정 위탁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u></p> <p>③ <u>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로 보험금액·손해율 등을 평가하여 사실상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u> 2. <u>손해사정업자별 손해율 총량한도 등을 제한하는 행위</u> 3. <u>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담보별로 보험금의 부지급, 인위적인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u> |

| 현 행 | 개 정 안 |
|-----|---|
| | ④ 영 제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에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 손해사정은 ①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②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 *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전문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9-16조의2제1항)
- 한편, 보험회사가 평가기준 수립시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삭감 유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손해사정 위탁 및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안 제9-16조의2제3항)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위탁 절차가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업무 위탁 과정의 객관성을 강화(안 제9-16조의2제4항)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일시 · 장소 · 방법 | 제시의견 | 조치결과 |
|--------|--------------|------|------|
|--------|--------------|------|------|

| | | | |
|------|-------------------|--|--|
| 보험회사 | 입법예고(4.12일~5.13일) | | |
| | 보험·손해사정업계 T/F | | |

3. 규제목표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 및 위탁 절차를 확립하여 손해사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
-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손해사정업무 위탁의 평가기준 및 절차 확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업무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손해사정의 장기적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바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① 마련 의무가 새로이 부여된 손해사정업자 위탁 평가기준의 경우 보험협회가 既제공 중인 모범기준*이 있어 준수부담이 크지 않음

*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기준 <별표>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사 평가에 관한 기준

②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 또한 보험협회 모범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다수 보험회사 내규에 既반영된 사항을 명료화하는 것에 불과

* 모범기준 제5조(위탁손해사정사 위탁 절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 | |
|------|------|------|
| 기술 | 경쟁 | 중기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 해당 여부 |
|---------------------------|-------|
|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 해당 없음 |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 해당 없음 |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 해당 없음 |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 해당 없음 |

- 중기영향평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평가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분류 | 적용여부 |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포괄적 개념 정의 | | 해당사항 없음 |
| 유연한 분류 체계 | | 해당사항 없음 |
| 네거티브 리스트 | | 해당사항 없음 |
| 사후 평가관리 | | 해당사항 없음 |
| 규제 샌드박스 |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플로리다주 손해사정사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위탁 시 준수해야할 절차, 최소 자격요건 등을 규정(Florida Statutes Chapter 626)
- (영국) 보험회사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수탁업체의 업무 기능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위임 정도 및 범위를 명확화 하도록 책임을 부여 (FCA Handbook SYSC* 3.2.1~3.2.4)
-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고위경영진 책임배분, 시스템 및 통제 규정(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

○ 타법사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도급, 용역, 위탁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해야함(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4조제9호)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건전성·안정성 평가기준을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2의3 및 별표2의5)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既 추진사항) 협회 모범규준을 통해 보험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시 평가기준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20.1월~),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평가시 금지행위를 설정, 위탁 절차 공정성을 강화('23.7월~)
- (규제 순응도) 지속적으로 보험·손해사정업계는 모범규준 제·개정 및 보험회사 내규 반영 등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온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손해사정과정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20.1월 시행)
 -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평가원칙 마련, 평가지표 합리화, 공시 강화 등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23.7월 시행)
-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21.5월)
 -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24.2월)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의무 이행상황 모니터링

3. 종합결론

- 손해사정 제도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 함으로써 손해사정 업무위탁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자 권익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 | 단위 |
|--------|--------|---------------|---------|--------------|
| 2024 | 2024 | 10 | 4.5 | 백만원, 현재가치 |

규제대안1 : 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기준 마련

| 영향집단 |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 | |
| | 간접 | |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 | | | |
| 정부 | | | | |
| 총 합계 | | | | |
| 기업순비용 | | | 연간균등순비용 | |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기준 마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 | |
|-----------|--|
| (정성)영향집단명 | 보험회사 |
| 활동제목 | 손해사정 업무위탁 평가기준 수립 및 절차 마련 |
| 비용항목 | 행정비용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현재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가 내규에 마련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행정비용이 소폭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 |
|-----------|--|
| (정성)영향집단명 |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
| 활동제목 | 손해사정 업무위탁 평가기준 수립 및 절차 마련 |
| 편익항목 | 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한 보험금 지급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p>그간 자기손해사정의 부당성*,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부적절한 보험금 부지급·삭감유도 등 문제점이 제기됨</p> <p>*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을 수행</p> <p>관련하여, 제도개선방안으로 지속 논의된 업무위탁 평가기준 수립 및 절차 마련 규정화를 통해 손해사정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이 기대됨</p> |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 | | | | | | | |
|------------|-------------------------|---|-----------|-----------------------|----|--|-----------|------|---------------|---|
| | 2.규제조문 | 보험업감독규정 안 제9-18조의3제2항 | | | | | | | | |
| | 3.위임법령 | 보험업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6조의2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4]제4호라목 | | | | | | | | |
| | 4.유형 | 신설 | 5.입법예고 | 2024.04.12~2024.05.13 | | | | | | |
|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p><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p> <p>○ 손해사정은 ①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②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p> <p><input type="checkbox"/> '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p> <p>*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p> <p>○ ' 24.2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 24.8.7일)</p> | | | | | | | | |
| | 7.규제내용 |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 보험업법('24.8.7일 시행 예정) 개정에 따른 외부 교육기준, 강사 자격요건을 구체화 | | | | | | | | |
|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td> <td>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한 일부 보험회사 및 등록 손해사정업자 1,705개(23년말 기준)</td> </tr> </tbody> </table> | | | 유형 | | 인원수 또는 규모 | 피규제자 |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 |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한 일부 보험회사 및 등록 손해사정업자 1,705개(23년말 기준) |
| | 유형 | | 인원수 또는 규모 | | | | | | | |
| 피규제자 |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 |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한 일부 보험회사 및 등록 손해사정업자 1,705개(23년말 기준) | | | | | | | | |
| 9.규제목표 | 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품질 제고 | | | | | | | | | |
| 규제의 적정성 여부 | 10.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손해사정사 교육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적은 반면 의무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손해사정 공급 등 편익이 큼 | | | |
| 기타 | 12.규제일몰제 | 대분류 | 소분류 | | |
| | |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 미해당 | |
| | |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 미해당 | |
| | |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 해당 | |
| | |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 |
| | |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 | |
| | |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 |
| | |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 | |
| | | 일몰설정여부 | 일몰조문 | 연장여부 | |
| | | 미설정 | | | |
| | 일몰유형 | 일몰설정기간 | 일몰주기 | | |
| | | | | | |
| |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p> <p>② 영 별표 4 제4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p> <p>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 산출 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 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p>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손해규모·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 ①손해발생 사실 확인 → ②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 ③손해사정서 작성
→ ④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서류심사로 3일내 지급시 생략 가능)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 분쟁조정 및 소송제기 등 후속절차로 해결되는바 원활한
보험금 지급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윤리성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제도개선을 논의한 결과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성 대두

○ 관련하여 손해사정 교육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24.2
월)되어 감독규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 의무교육 20시간 중 5시간 이상 포함되어야하는 외부
교육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교육 실시주체를
보험연수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정함(안 제9-18조의3제2항)
-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므로
손해사정 관련 업무경력 또는 보험 관련 전공 등 손해사정 외
부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안 제9-18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일시 · 장소 · 방법 | 제시의견 | 조치결과 |
|------------------|-------------------|------|------|
|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 | 입법예고(4.12일~5.13일) | | |
| | 보험·손해사정업계 T/F | | |

3. 규제목표

- 손해사정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손해사정업무의 품질을 향상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윤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보험금 지급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손해사정 외부교육 실시기관 및 강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한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의무교육 품질 제고 및 실효성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례적 타당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 | |
|------|----|----|
| 기술 | 경쟁 | 중기 |
| | |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 해당 여부 |
|---------------------------|-------|
|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 해당 없음 |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 해당 없음 |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 해당 없음 |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 해당 없음 |

- 중기영향평가가

손해사정사 의무교육 중 외부 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
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규제 차등화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로 활용할 경우, 규제기준이 기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고용친화성)을 검토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명백하게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인지, 신산업 분야에 있어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 검토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미설정시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미국보험감독기구(NAIC)의 위탁손해사정사 모델법은 유지보수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시건(1년), 노스캐롤라이나(1년), 네바다(3년), 애리조나(4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2년 주기로 손해사정 면허 갱신시 20~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Public Adjuster Model Act, Sec13.

- (영국) 손해사정사협회에 해당하는 CILA(Chartered Institute of Loss Adjusters)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인증자격을 보유한 모든 회원은 1년마다 35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타법사례

- 보험설계사 등의 경우에도 의무교육 중 외부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 자격요건 및 실시기관을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1항

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영 별표4 제1호가목1), 2) 및 5)세목과 제3호가목1)·2)세목의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영 별표4 제1호가목1), 2) 및 5)세목과 관련한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의무 외부교육 최소 시간은 5시간으로 규정되어 규제 준수 부담이 크지 않으며 교육방식도 사이버교육을 허용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21.5월)
 -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24.2월)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의무 이행상황 모니터링

3. 종합결론

-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위임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 권익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 | 단위 |
|--------|--------|---------------|---------|--------------|
| 2024 | 2024 | 10 | 4.5 | 백만원, 현재가치 |

| 규제대안1 : 손해사정 교육 | | | | |
|----------------------|----|----|---------|-----|
| 영향집단 |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 | |
| | 간접 | |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 | | | |
| 정부 | | | | |
| 총 합계 | | | | |
| 기업순비용 | | | 연간균등순비용 | |

| |
|-------------------|
|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손해사정 교육>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 | |
|-----------|--|
| (정성)영향집단명 | 교육의무를 이행하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 |
| 활동제목 | 손해사정 교육 |
| 비용항목 | 외부 교육 이수시 보험연수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의무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연수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하므로 그로 인한 교육기관 선택권 제약 등 간접적 비용 발생 |

간접편익

| | |
|-----------|---|
| (정성)영향집단명 | 교육의무를 이행하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 |
| 활동제목 | 손해사정 교육 |
| 편익항목 | 강사 자격요건 규정으로 외부 교육의 품질이 제고되어 손해사정업무 능력이 향상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의무적 보수교육의 효과성이 증진되는 것은 피규제자 입장에서도 손해사정 품질 제고·소비자 만족도 증진 등 편익이 되는 측면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 |
|-----------|--|
| (정성)영향집단명 |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
| 활동제목 | 손해사정 교육 |
| 편익항목 | 손해사정업무 품질 제고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는 자격 취득 후 의무 보수교육을 두지 않고 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

이로 인해 손해사정사의 윤리성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성 대두

보험업법 개정으로 의무 보수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강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됨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손해사정업자 공시 의무 | | | | | | | | |
|------------|---|--|-----------|-----------------------|----|--|-----------|------|--------|--|
| | 2.규제조문 | 보험업감독규정 안 제9-18조의4 | | | | | | | | |
| | 3.위임법령 | 보험업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7조제4항 및 시행령 제96조의8제3호 | | | | | | | | |
| | 4.유형 | 신설 | 5.입법예고 | 2024.04.12~2024.05.13 | | | | | | |
|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은 ①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②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input type="checkbox"/> '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input type="checkbox"/> ' 24.2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 24.8.7일) | | | | | | | | |
| | 7.규제내용 |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공시 관련 공시 주기 및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공시의무의 예외를 인정 | | | | | | | | |
|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손해사정업자</td> <td>법인 손해사정업자 419개 중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법인</td> </tr> </tbody> </table> | | | 유형 | | 인원수 또는 규모 | 피규제자 | 손해사정업자 | 법인 손해사정업자 419개 중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법인 |
| | 유형 | | 인원수 또는 규모 | | | | | | | |
| 피규제자 | 손해사정업자 | 법인 손해사정업자 419개 중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법인 | | | | | | | | |
| 9.규제목표 |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업자 경영현황 공시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자를 쉽게 확인 및 선임하도록 지원 | | | | | | | | | |
|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손해사정업자 경영공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공시의무 이행방식 명확화 및 손해사정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등 편익이 큼 | | | |
| 기타 | 12.규제일몰제 | 대분류 | 소분류 | | |
| | | 일몰설정에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 미해당 | |
| | |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 미해당 | |
| | |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 해당 | |
| | |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 |
| | |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 | |
| | |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 |
| | |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 | |
| | | 일몰설정여부 | 일몰조문 | 연장여부 | |
| | | 미설정 | | | |
| 일몰유형 | 일몰설정기간 | 일몰주기 | | | |
| | | | | | |
| |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p> <p>① 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 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영 제96조의8 제3호에서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손해규모·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 ①손해발생 사실 확인 → ②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 ③손해사정서 작성
→ ④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서류심사로 3일내 지급시 생략 가능)

○ 원활한 보험금 지급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

□ 손해사정업자의 윤리성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
되어 제도개선을 논의한 결과 경영공시 필요성 대두

○ 관련하여 손해사정업자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24.2월)되어 감독규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자를 확인하고 선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음
- 이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경영현황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 내용 및 방법을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9-18의4제1항 및 제2항)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명 | 일시 · 장소 · 방법 | 제시의견 | 조치결과 |
|--------|-------------------|------|------|
| 손해사정업자 | 입법예고(4.12일~5.13일) | | |
| | 보험·손해사정업계 T/F | | |

3. 규제목표

- 손해사정업자 경영현황 공시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자를 쉽게 확인 및 선임하도록 지원하고 손해사정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손해사정업자의 경영공시 내용 및 방법 구체화로 인한 비용 발생은 크지 않은 반면, 손해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라는 목적 달성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례적 타당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영향평가 | | |
|------|----|----|
| 기술 | 경쟁 | 중기 |
| | |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 해당 여부 |
|---------------------------|-------|
|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 해당 없음 |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 해당 없음 |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 해당 없음 |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 해당 없음 |

- 중기영향평가

손해사정업자 공시의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경영공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제1항

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① 영 제33조의4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제4-11조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5.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7.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8.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그간 업계 자율 노력으로 주소, 징계이력 등을 공시한 손해사정업자들도 있어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손해사정업자 준수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21.5월)
 -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24.2월)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의무 이행상황 모니터링

3. 종합결론

-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 공시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손해사정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및 보험계약자 권익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분석기준년도 | 규제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 | 단위 |
|--------|--------|---------------|---------|--------------|
| 2024 | 2024 | 10 | 4.5 | 백만원, 현재가치 |

규제대안1 : 손해사정업자 공시

| 영향집단 |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 | |
| | 간접 | |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 | | | |
| 정부 | | | | |
| 총 합계 | | | | |
| 기업순비용 | | | 연간균등순비용 | |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
|--|
| |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손해사정업자 공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 | |
|-----------|---|
| (정성)영향집단명 | 등록 손해사정사가 5명 이상인 손해사정업자 |
| 활동제목 | 손해사정업자 공시 내용 및 방법 등 구체화 |
| 비용항목 | 구체적 항목 작성에 따른 행정비용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공시 자료를 작성함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

간접편익

| | |
|-----------|---|
| (정성)영향집단명 | 등록 손해사정사가 5명 이상인 손해사정업자 |
| 활동제목 | 손해사정업자 공시 내용 및 방법 등 구체화 |
| 편익항목 |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시의무 이행시 혼란 예방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 |
|-----------|--|
| (정성)영향집단명 | 손해사정업자 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 |
| 활동제목 | 손해사정업자 공시 내용 및 방법 등 구체화 |
| 편익항목 | 손해사정업자 공시 실효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손해사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 |
| 일시적/반복적 | 반복적 |
| 근거설명 |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가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손해사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